# 성공회대학교 학칙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성공회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는 기독교와 민주주의의 이념에 입각하여 열림, 나눔, 섬김 정신으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교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인권과 평화,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학문연구와 고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평화와 생명존중의 가치로 민주사회 공동체를 열어가는 실천적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1.28. 2023.05.24〉
- **제2조(교육목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목표를 정한다. 〈개정 2015.01.28. 2023.05.24〉
  - 1. 뿌리에 힘쓰는 교육의 추구
  - 2. '함께 맞는 비'의 사회연대구축
  - 3. 가치가 생동하는 공간과 문화의 형성
- **제3조(교육조직과 학생정원)** ① 본 대학교에 대학으로서 열림교양대학, 나눔융합전공대학, 대학원으로서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둔다. <개정 2022.03.30.>
  - ②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학부의 모집단위를 둔다.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03.22. 2022.03.30>
  - ③ 대학원의 학칙과 학위 수여규정은 따로 정한다.

# 제2장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 제4조(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과 부설기관을 두고, 이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06.01.>
  - 1. 부속기관

중앙도서관, 학생생활관, 출판부, 전자계산소, 교목실, 학생상담센터, 대학합창단, 사회봉사센터, 대학발전실, 사회진출지원센터, 미디어센터, 건강증진센터, 현장실습지원실, 오페라단, 창업지원단, 인권센터, 구로마을대학, 공익신고센터 〈개정 2008.03.01., 2010.04.21., 2013.05.15., 2014.08.20., 2015.01.28., 2016.10.19., 2016.12.21., 2019.01.01., 2019.06.19., 2019.11.20., 2020.11.18. 2022.02.23. 2022.03.30. 2023.05.24〉

2. 부속연구기관

사회문화연구원, 신학연구원, 농림생태환경연구소, 정보통신연구소, ESG경영연구소, 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사회적기업 연구센터, 사회복지연구소, 동아시아연구소, 평생학습사회연구소, 우이인문학연구소, 성공회역사자료관, 디지털연구소 나비 〈개정 2007.11.01., 2013.08.21., 2018.07.18., 2019.09.18., 2022.03.30. 2023.05.24., 2024.03.20〉

3. 부속교육기관

음악원, 평생교육원 〈개정 2008.03.01., 2013.06.19., 2014.04.16., 2022.08.30〉

- 4. 부설연구원
  - 민주사회정책연구워
- 5. 사학혁신지원사업단 〈신설 2021.11.17.〉

## 제2장의 2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4조의2(산학협력단) ① 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산학협력단은 본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 했하다.
  - ③ 산학협력단에는 필요에 따라 기구 및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03.01., 2013.06.19.>
    - 1. 〈삭제〉
    - 2. 〈삭제〉
  - ④ 산학협력단에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제3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 **제5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개정 2007.03.01.〉
  - ②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③ 본 대학교의 학생이 교환학생 및 교육과정에 관한 시행세칙에 명시된 해외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내외에서 이수한 학기는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에 산입한다. <개정 2007.03.01., 2015.01.28., 2020.02.19.>
  - ④ <삭제 2007.03.01.>
  - ⑤ 전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졸업학점을 조기에 취득하고 6학기 이상 등록하였으며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4.20이상인 자는 조기졸업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9.〉

# 제4장 학년·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 **제6조(학년도·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개정 2007.03.01>
  - ② 학기는 매학년도 두 학기로 이루어지며,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신설 2007.03.01, 2012.11.21〉
  - ③ 방학중에 계절학기를 둘 수 있으며, 수업연한을 산정하는데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07.03.01.>
  - ④ 매학기 개강일은 학사일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5.10.28.〉
- 제7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점 당이수시간을 충족하는 조건하에 학생, 교과목 특성 및 교육효과를 고려하여 법정 수업 일

수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여 강의를 개설할 수 있다. 법정 수업 일수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여 강의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08.28〉

- ②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5.10.28.〉
- 제8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일요일, 개교기념일, 국정공휴일로 한다. 단, 개교기념일의 경우 그 다음날을 휴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9.03.01.〉
  - ② 휴업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에 따라 수업을 할 수 있다.

## 제5장 입학·편입학·재입학·전과

- 제9조(입학시기) 본 대학교의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까지로 하며, 재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 학기 개강 이전으로 한다. 단, 외국인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7.03.01., 2014.12.17, 2024.03.20〉
- 제10조(입학자격) 본 대학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거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14.12.17.>
- 제11조(편입학) 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고, 해당 학과(부) 또는 자율학부의 편입학 여석이 있을 경우 총장이 정한 전형을 거쳐 제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03.01.. 2017.03.22>
  - 1.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2학년 수료자
  - 2.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 3.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개정 2024.04.24.>
  - ② 〈삭제 2007.03.01〉
  - ③ 학사학위를 가진 자에게 정원 외로 제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학사편입 모집인원은 관계 법령(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17.3.22., 2018.01.23.>
- **제12조(재입학)** ①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본 대학교에 제적된 자의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03.01>
  - ② 재입학은 제적되기 전에 재적하던 학과(부) 또는 자율학부와 학년으로 허가된다. <개정 2007.03.01., 2017.3.22>
- 제13조(입학절차) 본 대학교 입학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입학원서와 총장이 따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03.01.>

- 제14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개정 2014.06.18., 2014.12.17.>
  - ② 입학 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두며,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03.01., 2014.06.18>
- 제15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총장은 학칙과 입학전형에 따라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며 입학
  - 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22.>
  - ② <삭제 2007.03.01.>
  -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17., 2016.06. 22.>
    - 1.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2. 지원자격을 위반한 경우
    - 3. 전형자료에 사용되는 각종 증명서등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 ④ <삭제 2016.06.22.>

### 제16조(보증인) 〈삭제 2007.03.01.〉

- 제16조(외국인 학생의 입학)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지망하는 경우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전형을 거쳐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7.03.01.〉
- 제16조의 2(외국인 학생의 편입학) 외국인 학생으로서 대학 편입학 자격이 인정된 자는 정규학생으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각 학년별 허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7.03.01.〉 〈개정 2024.02.21.〉
  - 1. 2학년: 정규대학 또는 전문대학 1학년 이상 수료자
  - 2. 3학년: 정규대학 2학년 이상 수료자 혹은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개정 2024.04.24.>
  - 3. 4학년: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개정 2024.04.24.>
- 제17조(전과) ① 전과는 받아들이는 당해 학년도 학과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의 승인을 받아 20%를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03.01.〉
  - ② 전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한다.
  - ③ 학과제 입학생의 융합자율학부로의 소속변경은 전공제 교육과정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1.05.26.>

# 제6장 등록 및 수강신청

- 제18조(등록) ① 학생은 매 학기초 소정 기일 안에 등록해야 한다.
  - ② 등록은 수강신청을 하고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
- 제19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수강신청기간에 그 학기에 수강할 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일단 수강승인을 얻은 과목은 담당교수와 지도교수의 승인 없이 변경되거나 취소할 수 없다.

## 제7장 휴학·복학·퇴학·제적

- 제20조(휴학)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지도교수의 동의와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17.03.22>
  - ②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10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병역,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질병으로 말미암은 휴학은 일반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3.01.16., 2015.01.28. 2023.06.21. 2024.04.24>
  - ③ 휴학은 학기 단위로 한다.
- 제21조(복학) 휴학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복학하며,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 제22조(자원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동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 정 2017.03.22.>
- **제23조(제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처리한다. <개정 2015.01.28.>
  - 1. 〈삭제 2007.03.01〉
  - 2. 소정 기일내에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07.03.01., 2015.01.28.〉
  - 3.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않은 자
  - 4. 국내 다른 대학에 이중 입학한 자 〈개정 2015.01.28.〉

## 제8장 교육과정·수업·학점·졸업 및 학위

- 제24조(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본 대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0.02.19. 2022.04.18>
- 제25조(학점) ① 교과목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 ② 교과목의 학점수는 매주 1시간씩 한학기의 수업이 15시간 이상 이루어질 경우를 1학점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5.01.28., 2016.12.21.>
  - ③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의 경우에는 매주 1시간씩 한학기의 수업이 15시간 이상일 경우를 1학점으로 하되, 예체능 교과목 등 교과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1.〉

제26조(졸업학점) 졸업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은 130학점으로 한다.

- **제27조(학점의 인정)** ①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이 D0 이상이거나 합격(P)일 경우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7.03.01.>
  - ② 〈삭제 2007.03.01.〉
  - ③ 편입학한 학생이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나 본 대학교의 학생이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본 대학교의 학점취득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5.01.28.>
  - ④ 본 대학교의 학생이 국내외 연수나 실습 등에 참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여 본 대학교의 학점취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⑤ 국외대학에 교환유학생 또는 장학생으로 파견되는 본 대학교 학생의 학점인정 및 환산은 본 대학교 본 학부 해당 학부(과) 교수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⑥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프로그램을 통한 대학과목 선이수 취득 학점은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 ⑦ 병역법에 따라 군 복무중인 자가 소정의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복무기간 중 최대 6학점 이내에서 교양선택과목으로 인정하며, 성적처리는 계절학기로 한다. 〈신설 2016. 02.24.〉
- 제28조(개설교과목) ① 매 학기 개설할 교과목과 시간표는 매 학기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과정위원회가 결정하여 교무처장이 공고한다. <개정 2022.04.18.>
  - ② 수강신청학생이 일정수 미만인 과목의 개설은 취소될 수 있다.
  - ③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과 운영 기준에 관해서는 "현장실습교과목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7.02.27〉
- 제29조(학기당 취득학점) 학생은 매 학기당 최대 19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직전학기의 평량평균이 4.0 이상인 학생은 최대 22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7.03.01.>
- **제29조의 2(학기당 최저 이수학점)** 매 학기 최저 이수학점은 0학점으로 한다. 〈신설 2017.09.20.〉
- 제30조(학사경고) 학기말 성적의 평점평균이 1.5 미만인 학생은 학사경고를 받는다.
- 제31조(학사제적)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거나 통산 4회를 받은 자는 제적된다.
- 제32조(수료) ①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 1. 졸업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학과(부) 또는 전공 <개정 2017.03.22> 제1학년 : 35학점 이상

제2학년 : 70학점 이상 제3학년 : 105학점 이상 제4학년 : 140학점 이상

2. 졸업학점이 130학점 이상인 학과(부) 또는 전공 〈개정 2017.03.22〉

제1학년 : 34학점 이상 제2학년 : 68학점 이상 제3학년 : 102학점 이상 제4학년 : 130학점 이상

② 제1항 1호의 대상은 2001이전 학번부터 적용되며 제1항 2호의 대상은 2002학번부터 적용하다. <개정 2017.03.22.>

제33조(교육과정) ① 본 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양과정, 전공탐색과정, 전공과 정, 특별과정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8.02.21., 2020.02.19.>

- ② 교양과정은 열림교양대학이 개설하는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7.03.22., 2018.02.21.>
- ③ 전공탐색과정은 각 융합자율학부 또는 전공이 개설하는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신설 2018.02.21.〉
- ④ 전공과정은 각 전공이 개설하는 교과목으로 구성된다.<개정 2017.03.22., 2018.02.21.>
- ⑤ 특별과정은 각 전공이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인정하는 과정으로, 그 세부사항은 교과과정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개정 2018.02.21.>

**제34조(졸업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졸업을 인정하고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5.01.28., 2018.02.21.〉

- 1. 졸업학점 13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2. 비아메디아 채플 이수기준을 충족한 자. 다만, 외국인학생은 채플 이수를 면제한다. <개 정 2024.02.21.>
- 3. 사회봉사 이수기준을 충족한 자. 다만, 장애학생의 경우 사회봉사 이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 총장은 이에 대한 이수를 면제할 수 있으며, 외국인학생은 사회봉사 이수를 면제한다. <개정 2024.02.21.>
- 4. 교양필수, 전공필수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5. 다음 전공 이수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각 전공에서 요구하는 졸업자격을 충족한 자가. 주전공과 부전공
  - 나. 복수1전공과 복수2전공
  - 다. 〈삭제 2019.08.28〉
- 6. 특별과정을 신청한 경우, 그 이수기준을 충족한 자
- 7. 전공탐색 이수학점을 충족한 자
- 8. 외국인학생의 졸업요건은 별도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4.02.21.〉
- ② 학위증서는 1년에 두 번 학기말에 별지 제1호와 같은 서식에 의하여 수여한다.

제35조 〈삭제 2015.01.28.〉

- 제35조의 2(학사학위 취득 유예) ① 졸업요건을 충족하고도 졸업시기를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에 학사학위 취득 유예신청서를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를 경유, 교무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03.22., 2019.01.22.>
  - ②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신청한 자는 학칙 제19조(수강)에도 불구하고 수강 의무는 없으나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의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11.21., 2019.01.22.〉
  - ③ 학사학위 취득 유예 기간에는 휴학할 수 없다. <개정 2019.01.22.>
  - ④ 학사학위 취득 유예 횟수는 최대 4학기로 한다. <개정 2019.01.22.>
  - ⑤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신청한 자도 재수강이 아닌 경우 해당 학기의 개설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신설 2019.01.22.〉

[본조신설 2008.08.01.][제목개정 2019.01.22.]

# 제9장 시험·성적

- 제36조(시험) ① 담당교수는 담당교과목에 대하여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및 그 외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모든 시험의 방법과 일자는 담당교수가 정하되 학기말고사의 일자는 학사일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03.01., 2015.01.28.〉
  - ③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학생은 사유서를 제출하고 담당 교수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 제37조(출석의무) 한 학기 총 수업시간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제38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04.17.2023.06.21.>

등 그	평 점(성 적)
$A^{\scriptscriptstyle +}$	4.5
$A^0$	4.0
$B^{+}$	3.5
$\mathrm{B}^0$	3.0
C <sup>+</sup>	2.5
C <sub>0</sub>	2.0
$\mathrm{D}^{\scriptscriptstyle{+}}$	1.5
$D_0$	1.0
F	0
P	합격
NP	불합격
W	취소
I	보류

- ② 평점을 부여하는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험성적, 과제물 평가, 출석률, 평소 학습상태 등을 종합하여 ①항의 표와 같이 9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과목의 특성에 따라 절대평가가 필요한 과목은 매학기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대평가에서 예외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05.28., 2015.01.28., 2020.02.19. 2022.04.18〉
- ③ 교과목을 재수강하여 새 평점을 받은 경우 새 평점으로 대체한다. 〈개정 2007.03.01〉
- ④ 평점을 부여하지 않는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P(합격)과 NP(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09.03.01. 2023.06.21>
- ⑤ 학업성적이 해당학기에 평가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학기의 학업성적 은 평가될 때까지 보류(I)한다.
- 제39조(성적취소) 성적 확정 이후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의 성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03.01. 2023.06.21>

## 제10장 납입금

제40조(납입금) 학생은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1조(납입금의 고지) 납입금의 세목과 액수, 납입절차는 총장이 등록기간 전에 공고한다.

**제42조(납입금의 반환)** 납입금의 반환은 관계 법령(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시행 2011.12.28)에 따른다. <개정 2012.11.21.>

# 제11장 장 학 금

- 제43조(지급대상) 본 대학교 학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학자금의 곤란으로 학업계속에 지장이 있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제44조(지급절차) 장학금을 지급받을 학생은 관련 규정과 장학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5.01.28.>

# 제12장 포상과 징계

- **제45조(포상)** ①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하거나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포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제46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1. 성행이 불량한 자

- 2. 학칙 등 규정을 위반한 자
-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 제13장 공개 강좌

- 제47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교에 본 대학교 학생 이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 ②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4장 직 제

제48조(직제) 본 대학교의 직제는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 정관에 따라 따로 정한다.

# 제15장 교수회

제49조(교수회) 본 대학교의 중요한 학사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제50조(구성) 교수회는 본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제51조(의장) ① 교수회 의장은 교수회에서 호선한다.

② 교수회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2조(소집) 교수회 의장은 교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3조(정족수)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54조(기능) 교수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2. 입학 및 졸업 또는 수료에 관한 사항
- 3.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6장 위원회

**제55조(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학사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본 대학교의 위원회설치운영규정에 의한다.

# 제17장 재외국민

- 제56조(재외국민 등) 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총장은 특별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57조(학칙준용) 학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입학하는 학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 제18장 학생활동

- **제58조(학생활동)** 학생은 본 대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덕성을 기르고 학업을 연마하며 건전 한 신체를 다련하기 위한 과외활동을 할 수 있다.
- 제59조(총학생회)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자치활동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되는 총학생회를 둔다.
  - ② 총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제60조(학생단체)** 총학생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학생단체를 조직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 제61조(학생지도) 총장은 총학생회와 학생단체 및 기타 학생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 수를 임명하거나 학생지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9장 자체평가

- 제62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의 질 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 ② 자체평가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0장 등록금심의위원회 <신설 2010.12.24.>

제63조(등록금심의위원회) 등록금을 정할 때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 회의 구성 및 세부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21장 장애학생 등 〈신설 2015.01.28.〉

**제64조(장애학생 지원)** 장애학생이 교내 활동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장애학생 지원체제를 구축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22장 학칙 세부 사항 〈신설 2015.01.28.〉

제65조(세부사항) ① 학칙 중 학사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사에관한시행세칙에 따른다.

- ② 학칙 중 교과과정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과과정에관한시행세칙에 따른다.
- ③ 시행세칙에서 정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부적인 사항을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1994년 1월 6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1996년 2월 29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본 학칙 중 제5조 1항. 제33조 2항 및 3항은 199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다.

#### 부 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5조의 4항 및 5항, 제27조의 3항 및 4항은 199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③ (경과조치) 제33조의 2항 및 3항은 199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④ (경과조치) 제42조는 199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 ⑤ (경과조치) 1996학년도 신입생중 일어학과는 명칭을 일어일본학과로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 학부로 통합된 학과의 재학생은 1999년 2월말 졸업시까지 이전 학과의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라 종전학위를 수여한다.
  - 2. 학부로 통합된 학과의 휴학생 및 제적생이 복학 및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된 학부로 복학 및 재입학하여야 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26조, 제29조는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며, 복학생 및 재입학생은 복학 및 재입학 학년도의 규정을 따른다.
- ③ (경과조치) 제33조는 200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④ (경과조치) 제3조 2항 별표1은 200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0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며, 복학생 및 재입학생은 입학년도의 규정을 따른다.

#### 부 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3조 2항 별표1은 200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04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며, 복학생 및 재입학생은 입학년도의 규정을 따른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4년 8월 1일 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5년 6월 8일 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6년 3월 1일 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6년 4월 1일 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3월 1일 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11월 1일 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8년 3월 1일 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8년 8월 20일 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9년 3월 1일 부터 변경 시행한다.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9년 12월 23일 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0년 4월 21일 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유통정보학과가 2011학년도 모집부터 경영학부로 변경됨에 따라 2010학년도 전기 이전까지의 졸업자는 종전과 같이 학위증서에 유통정보학과로 기재하고, 2010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학위증서에 경영학부(유통정보 전공)으로 기재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0년 12월 28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2년 11월 2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3년 5월 15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멀티미디어시스템공학과를 2014학년도 모집부터 컴퓨터공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현재의 재적생의 소속 학과를 컴퓨터공학과로 변경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단, 사회교육원의 회계 전환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3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디지털컨텐츠학과를 2015학년도 모집부터 사회계열로 변경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4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4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5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디지털컨텐츠학과를 2017학년도 모집부터 공학계열로 변경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7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7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29조의 2의 경우 시행일 이전 이수학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33조, 제34조는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에게 적용하며,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는 개정 이전 학칙을 적용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9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9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 さ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0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최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1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1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2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3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3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 \* 학부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

계 열	학 부(과) 명	학위종별	1998 학년도	1999 학년도	2000 학년도	2001 학년도	2002 학년도	2003 학년도	2004 학년도	2005 학년도	2006 학년도	2007 학년도
	기독교학과	문학사			30							
	신 학 과	신학사	25	25		30	30	30	30	30	30	30
	영어학과(야)	문학사	50									
인 문	영어학과(주)	문학사		40	40	40	40	40	40	40	40	40
	일어일본학과(야)	문학사	50									
	일어일본학과(주)	문학사		40	40	40	40	40	40	40	40	40
	중어중국학과	문학사		40	35	35	35	35	35	35	35	35
	사회복지학과(야)	문학사	50									
	사회복지학과(주)	문학사	25	50	50	50	50	50	50	50	50	50
	사회학과 (야)	문학사	50									
	사회과학부 (경제학사회학정치학)	문학사		75	75	75	75	75	75	75	75	75
사 회	신문방송학과(야)	문학사	50									
	신문방송학과(주)	문학사		40	40	40	40	40	40	40	40	40
	유통정보학과(야)	경영학사	50									
	유통정보학과(주)	경영학사		40	40	40	40	40	40	40	40	40
	연계전공	비정부기구학사										
	연계전공	문화기획학사										
	전산정보학과	이학사	80									
-1 41	정보통신학과	이학사	50									
자 연	컴퓨터정보학부	이학사		150	150							
	디지털컨텐츠학과	이학사					40	40	40	40	40	40
공 학	컴퓨터정보공학부 (멀티미디어기술·소프 트웨어개발·정보통신)					150	150	150				
	멀티미디어 시스템공학과								40	40	40	40
	소프트웨어 공학과								40	40	40	40
	정보통신 공학과								40	40	40	40
	글로컬 IT학과								30	30	30	30
	합 계		480	500	500	500	540	540	540	540	540	540

계 열	학과(부) 명	학위종별	2008 학년도	2009 학년도	2010 학년도	2011 학년도	2012 학년도	2013 학년도	2014 학년도	2015 학년도	2016 학년도	2017 학년도
	기독교학과	문학사										
	신 학 과	신학사	30	30	30	30	30	30	30	28	28	28
	영어학과(야)	문학사										
인 문	영어학과(주)	문학사	40	40	40	40	40	40	40	38	38	37
	일어일본학과(야)	문학사										
	일어일본학과(주)	문학사	40	40	40	40	40	40	40	38	38	37
	중어중국학과	문학사	35	35	35	35	35	35	35	33	33	33
	사회복지학과(야)	문학사										
	사회복지학과(주)	문학사	50	50	50	50	50	50	50	48	48	47
	사회학과 (야)	문학사										
	사회과학부 (경제학시회학정치학)	사회학사 경제학사 정치학사 <개정 2012.11. 21>	75	75	75	75	75	75	75	72	72	70
사 회	신문방송학과(야)	문학사										
	신문방송학과(주)	문학사	40	40	40	40	40	40	40	38	38	37
	유통정보학과(야)	경영학사										
	유통정보학과(주)	경영학사	40	40	40							
	경영학부	경영학사				40	40	40	40	38	38	37
	연계전공	비정부기구학사										
	연계전공	문화기획학사										
	디지털컨텐츠학과	문학사								38	38	
	전산정보학과	이학사										
-) A	정보통신학과	이학사										
자 연	컴퓨터정보학부	이학사										
	디지털컨텐츠학과	이학사	40	40	40	40	40	40	40			
~ 하	컴퓨터정보공학부 (멀티미디어기술·소프 트웨어개발·정보통신)	공학사										
	멀티미디어 시스템공학과	공학사	40	40	40	40	40	40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40	38	38	37
	소프트웨어공학과	공학사	40	40	40	40	40	40	40	38	38	37
	정보통신공학과	공학사	40	40	40	40	40	40	40	38	38	37
	글로컬IT학과	공학사	30	30	30	30	30	30	30	28	28	28
	디지털컨텐츠학과	공학사										37
	합 계		540	540	540	540	540	540	540	513	513	502

#### \* 학부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

계열	자율학부	전공명	학위종별	2018 학년도
인문	인문융합 자율학부	<ul><li>영어학전공</li><li>일어일본학전공</li><li>중어중국학전공</li><li>기독교문화전공</li></ul>	문학사	135
사회	사회융합 자율학부	<ul> <li>경제학전공</li> <li>경영학전공</li> <li>정치학전공</li> <li>사회학전공</li> <li>사회복지학전공</li> </ul>	문학사	154
	미디어콘텐츠융합 자율학부	<ul><li>신문방송학전공</li><li>디지털콘텐츠전공</li></ul>	문학사	74
· 장학	<ul> <li>컴퓨터공학전공</li> <li>소프트웨어공학전공</li> <li>정보통신공학전공</li> <li>글로컬IT전공</li> <li>인공지능전공</li> </ul>		공학사	139
혁신융합전공		<ul> <li>문화기획전공</li> <li>문화미디어콘텐츠전공</li> <li>국제문화전공</li> <li>사회적경제_혁신팀창업전공</li> <li>평화·통일전공</li> </ul>		
7	자기주도설계전공			
		합 계		502

- 〈개정 2010.04.21, 유통정보학과(주) 폐지하고 경영학부(주) 신설함〉
- 〈개정 2012.11.21, 사회과학부 학위종별의 문학사를 사회학사, 경제학사, 정치학사로 개정〉
- 〈개정 2013.05.15, 멀티미디어시스템공학과를 폐지하고 컴퓨터공학과 신설함〉
- 〈개정 2014.02.19, 디지털컨텐츠학과를 자연계열에서 사회계열로 변경함〉
- 〈개정 2014.04.11, 학과별 입학정원을 조정함〉
- 〈개정 2015.03.18, 디지털컨텐츠학과를 2017학년도부터 사회계열에서 공학계열로 변경함〉
- 〈개정 2016.05.25, 학과별 입학정원을 조정함〉
- 〈개정 2017.03.22, 모집단위와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을 조정함〉
- 〈개정 2019.10.16. 사회과학전공을 사회학전공, 경제학전공, 정치학전공으로 세부 표기함〉
- <개정 2020.06.17. 미디어컨텐츠융합자율학부를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로, 디지털컨텐츠전공을 디지털콘텐츠전 공으로 변경함>
- 〈개정 2020.07.15. 혁신융합전공과 자기주도설계전공을 각 학부에서 분리하여 표기함〉
- 〈개정 2021.07.21. IT융합자율학부 내에 인공지능전공을 신설함〉

## \* 학부 (2024학년도 이후 입학생) <신설2023.04.05.> <개정 2023.11.22.>

계열	학부	전공명	학위종별	2024학년도	
	인문융합콘텐츠학부	<ul><li>영어학전공</li><li>일어일본학전공</li><li>중어중국학전공</li><li>종교와신학전공</li></ul>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80	
	경영학부	• 경영학전공	경영학사	50	
인문 사회	사회융합학부	사회학전공     경제학전공     정치외교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101	
	미디어콘텐츠 융합학부	<ul><li>신문방송학전공</li><li>디지털콘텐츠전공</li><li>영상콘텐츠전공</li></ul>	문학사 디지털콘텐츠학사 영상콘텐츠학사	91	
	미래융합학부	<ul><li> 빅데이터응용전공</li><li> 인공지능전공</li></ul>	데이터사이언스학사 인공지능학사	50	
공학	소프트웨어융합학부	• 소프트웨어융합전공	공학사	130	
인문 사회	국제학부	<ul><li>글로벌디지털경영전공</li><li>글로벌미디어아트경영전공</li></ul>	경영학사 영상콘텐츠학사		
자 기	·  주도설계전공				
합 계					

<sup>※</sup> 국제학부는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임

〈개정 2023.11.22.〉 국제학부 글로벌미디어아트경영전공(영상콘텐츠학사) 신설, 사회융합학부 사회학전공 학위종별을 사회학사로 개정함.

제 호



# 학 위 증 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우리 대학교 학위과정으로 학 전공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학위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성공회대학교 총장

학위등록번호 : 성공회대 (학)